原子力事故와 法的問題

具 然 昌
〈本報編輯委員·경희大法大학장·法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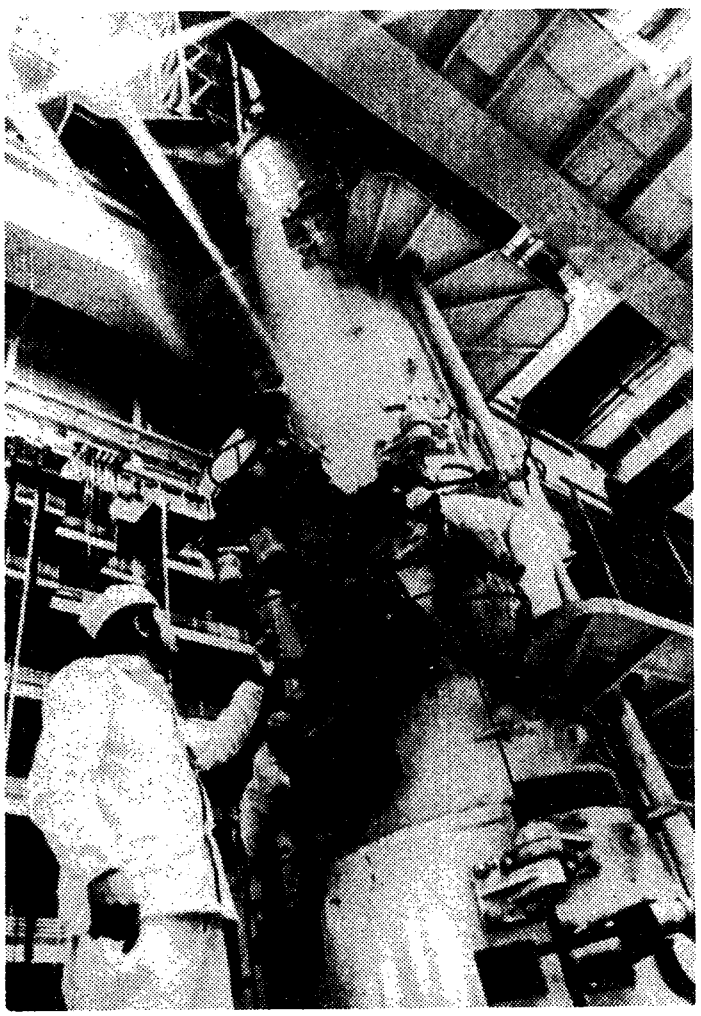

체르노빌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받은 국가가 소련정부를 상대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損害賠償의 訴를 제기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이 提訴에 應訴하지 않는 한 그 구제의 실현성은 전무하다.

지난 4월 29일 소련의 Chernobyl 原子力發電所 慘事는 온 세계인을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原子爐의 溶解·爆發은 아직도 그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人命被害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의 健康과 環境에의 被害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도 有史이래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이 가져다 준 가장 큰 慘事가 될 것 같다. 더구나 이 엄청난 慘事의 發生이 인접국가의 컴퓨터탐지기가 美國의 人工衛星에 의하여 探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련당국은 이 事故를 숨기려 했던 점, 그리고 各國의 사고설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外面했다는 사실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있어서도 國際的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實感케 해 주고 있다.

1954년 史上 최초로 原子力推進發電所가 Moscow 인근에 설치·가동되었을 때만해도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은 밝은 來日을 약속해 주는 曙光이 아닐 수 없었다.

1945년의 日本에서의 原子彈被爆의 기억이 생생하였기에 더욱 그 기대는 컸을 것이다.

오늘날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은 날로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 醫療, 工業, 農業的 利用에 불가결한 정도로 까지 되었다. 그 중에서도 原子力發電은 그 중요성이나 규모에 있어 가장 현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原子力에너지는 다른 에너지生産에서와는 달리 大氣汚染을 유발하지 않는 깨끗하고 經濟的인 에너지源일 뿐 아니라 石油·石炭등 化石燃料가 부족·결여된 國家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는 에너지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6년 4월 현재 世界的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原子力發電所가 388基나 가동중이고, 建設 또는 建設準備中인 것이 158基나 된다. (Time誌, 1986.5.12)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電力生産의 原子力에의 依存度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프랑스처럼 그 의존도가 65%나 되거나 이에 가까워지는 나라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 依存度가 현재는 불과 18%에 지나지 않으나 急增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原子力은 人類에게 부여된 이른바 복합적 祝福(mixed blessing)이 아닐 수 없다.

原子力의 戰爭用 利用에 따른 被害는 그만두고서라도 드물기는 하나 이른바 原子力事故가 항시 도사리고 있다. 아무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도 危險性은 항상 존재한다.

이번의 Chernobyl事故가 결코 처음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人命被害는 적었거나 없었다 할지라도 그간 原子力事故는 적지 않았다.

1952년 12월에 카나다의 試驗用原子爐事故, 1957년 10월 英國 리버풀의 Windscale

〈체르노빌 인근 코필로포에서 한 어린이가 방사능측정검사를 받고 있다〉

Pile No.1 풀로토늄생산공장사고, 1961년 1월 美國 Idaho Falls 근처의 軍事試驗用原子爐事故, 1975년 3월 Alabama州 Decatur의 Browns Ferry 누출사고가 있었다.

특히 1979년 Three Mile Island의 原子力事故는 美國人은 물론 世界人들에게 原子力發電所가 항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고, 심지어는 그 영향으로 Wisconsin州의 議會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자체를 禁止하는 立法까지 하였다.

그후에도 1986年 1月 Oklahoma의 Gore에서 Kerr-McGee事故가 있었다. 事故가 있을 적마다 各國에 경각심을 주어 다시 한번 安全性 點檢을 하게 만들곤 해왔다.

原子力事故는 그 규모, 누출된 物質의 量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의 生命을 앗아가기도 하고 生殖力을 상실시키고, 癌을 유발시키거나 動植物의 生産性을 파괴시키는등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그렇

기 때문에 各國에서는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있어 그 安全性 確保를 위한 技術的·法的·行政的 對策이 강구되어 왔다.

특히 法的 側面에서 볼 때 原子力發電所의 事故에 관하여는 그 防止를 위한 公法的 規制와 발생한 被害의 私法的 救濟가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原子力事故의 發生을 防止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各國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그 運用에 있어서도 事故發生을 예방하기 위한 安全性 確保를 위한 각종의 對策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發電後에 생기는 核廢棄物의 安全處理에까지도 엄격한 規制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1958년 3월 法律 第

〈소련의 원자로 사고로 인해 방사능 낙진이 있을지 몰라 평소에는 맞을 수 있는 비인데도 모두가 우산을 썼다〉

183호로 原子力法이 제정되어 放射性物質의 安全管理를 도모해 왔다. 그후 관계기관들이 亂立했던 것을 1982년 4월 原子力關係法을 전면적으로 整備하였다. 原子力法 第1條에서는 「原子力의 研究·開發·生産·利用과 이에 따른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學術의 進步와 産業의 振興을 촉진하므로써 國民生活의 向上과 福祉增進에 기여하며, 放射線에 의한 災害의 防止와 公共의 安全을 도모함」을 그 目的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原子力法 제11條에 의하면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건설하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바, 이때의 許可申請書에는 環境影響評價書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許可申請書의 구비서류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豫備安全性分析報告書이다. 따라서 原子爐의 設置段階에서부터 安全性과 環境影響을 엄격히 分析·評價하므로써 미연에 事故와 環境에의 惡影響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일단 건설된 이후에는 安全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일정한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일정한 基準에 따라 運營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原子力損害를 배상하므로써 被害者救濟를 위하여 1969年 原子力損害賠償法이 제정되었다.

原子力損害에 대하여는 原子力事業者가 無過失賠償責任을 지도록 하며, 核燃料物質등의 運搬으로 생긴 原子力損害에 대하여도 그 物質의 發送人인 原子力事業者가 賠償責任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船舶에 설치한 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한 原子力損害에 대하여는 商法上에 責任制限規定의 적용을 배제하므로써 被害者의 救濟를 强化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原子力事故에 대한 法的 對策은 世界各國이 거의 例外없이 모두 갖추고 있는 國內法的 體制이다. 그러나 問題는 環境問題가 성질상 汎世界的 性格(glob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음에 있다.

1972년 로마클럽의 「成長의 限界」報告書가 環境汚染問題에 관하여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汚染因子들은 온 世界에 뿌려지게 되고, 그 害로운 영향은 그 발생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

진 곳에 나타나게 된다.

이번의 Chernobyl의 原子爐暴發에서 방산된 核物質은 大氣를 통하여 혹은 비나 눈에 섞여 다른 나라의 環境이나 人體에 두려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長期的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地域은 지극히 광범하다. 西部우크라이나는 물론 폴랜드, 동서독, 체코, 항가리, 유고, 루우마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남부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그리고 심지어는 이태리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이미 채소나 우유를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수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損害의 賠償은 國內法的 限界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油類 특히 油槽船事故에 의한 海洋汚染은 그 빈번한 발생 때문에 그 防止와 被害救濟에 관하여는 國際法의 발달이 비교적 현저한 편이다.

1954년 「油類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國際協約」이 채택된 이래 수차에 걸쳐 修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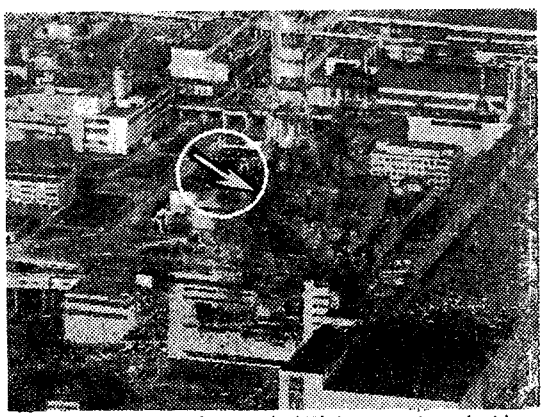

〈소련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 화살표가 사고 지점을 가리켜 주고 있다〉

强化되었고, 1969년에는 「油類에 의한 被害의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이 채택되어 海上의 油類汚染에 대한 國際法은 대체로 정비되어 가고 있는 편이다.

이에 반하여 放射能汚染에 관하여는 1958년 체결된 「公害에 관한 제네바協約」에서 各國은 放射性物質을 폐기하므로써 생긴 海洋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義務를 부과하고 있고, 1962년에 체결된 「核船舶의 運行者의 責任에 관한 協約」에서 核船舶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을 따름이다.

Chernobyl事故에 의한 被害의 경우 이를 賠償하기 위한 國際協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放射能落塵에 의한 被害를 보상해 준 事例가 한 件 있을 뿐이다. 1954년 3월 1일 美國이 마샬群島의 비키니環礁에서 核爆發實驗을 한것은 지금도 쉽게 상기된다. 당시 美國政府가 통행금지 시켰던 위험수역을 훨씬 벗어난 海域을 항행하던 日本漁船 第5福龍丸이 방사능낙진으로 被害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日本에서는 176톤의 참치 市場價格은 41%까지 下落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1955년 1월4일 美·日간의 交換覺書를 통하여 美國은 自國의 核實驗結果 發生한 日本漁夫의 傷害 및 기타 손해에 대한 法的 責任과는 관계없이 이른바 恩惠로서(ex gratia) 200萬弗을 日本側에 제공하므로써 이 사건의 최종적인 타결을 보았었다.

Chernobyl事故와 관련하여 被害받은 國家가 소련政府를 상대로 하여 國際司法裁判所에 그 損害賠償의 訴를 제기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이 提訴에 應訴하지 않는 限 그 救濟의 實現性은 全無하다.

1983년 9월3일의 KAL機 격추사건이나 이번 Chernobyl事故와 관련하여 보여준 지금까지의 소련政府의 태도로 보아 應訴할 것이 전혀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 5月 日本 東京에서 개최된 自由主義 7個國의 頂上會談에서 처음 議題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던 Chernobyl事故에 관련된 소련政府의 성실한 對應策을 촉구한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國際與論에 호소하는 高度의 政治性을 띤 조치일 따름이다.

Chernobyl事故에 즈음하여 原子力事故의 豫防을 위한 國際協約의 체결과 동시에 특히 그 被害賠償에 관한 協約의 체결이 필요하다.

비록 그 發生率은 낮다 할지라도 急增하는 原子力發電所의 숫자와 일단 發生했을 경우의 그 被害의 심각성과 광역성에 비추어 國內法的 規制의 强化와 國際的인 被害賠償의 實現의 保障을 도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